

변경대비표

2023.10.31

○ 펀드명 :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 정정사유 :

- 1)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 2) 법 개정사항 반영
- 3)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 상세내역 :

[집합투자규약]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법 개정사항 반영	①(생략)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법 개정사항 반영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u>1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u>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②~④(생략)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④(현행과 같음)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법 개정사항 반영	①(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5. (생략) ③~⑪(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5. (현행과 같음) ③~⑪(현행과 같음)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 법 개정사항 반영 3)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요약] - 투자비용 - 투자실적추이 - 운용전문인력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별첨>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p>	<p>법 개정사항 반영</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u>),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다만,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p> <p>[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대여 및 증권의 차입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①~⑤(생략)</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다만,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p> <p>[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대여 및 증권의 차입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①~⑤(현행과 같음)</p>
<p>나. 투자제한</p>	<p>법 개정사항 반영</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 [동일종목 투자]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u></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 [동일종목 투자]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u></p>

		<p>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신 설></p> <p>※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동일종목의 투자 및 파생상품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①~⑤(생략)</p>	<p>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집합투자증권 투자]</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동일종목의 투자, 집합투자증권투자, 파생상품투자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①~⑤(현행과 같음)</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다. 기타 투자위험</p>	<p>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p>	<p><신 설></p>	<p>[증권대차 거래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초과수익 전략의 일환으로 증권대차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로 시장상황에 따라 이러한 거래로 인해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증권대차거래 이후,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해 대차증권의 상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미상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대차거래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가치가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에서 정한 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p>	<p>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0.82%이므로 6등급 중 낮은 위험(5등급)으로 분류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1.05%이므로 6등급 중 낮은 위험(5등급)으로 분류됩니다.</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p>	<p>법 개정사항 반영</p>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p> <table border="1" data-bbox="528 1861 959 2136">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세액공제</td> <td>-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p> <table border="1" data-bbox="991 1861 1422 2136">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세액공제</td> <td>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p>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p>※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p> <p>※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 단,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p> <p>※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나. 임의해지</p>	<p>법 개정사항 반영</p>	<p>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1)~2) (생략)</p> <p>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p>	<p>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p>

		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법 개정사항 반영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 (생략)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⑦ (생략)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⑪ (생략)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⑪ (현행과 같음)

*** 별첨**

주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요약] - 투자비용 - 투자실적추이 - 운용전문인력		